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비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8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22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비 규정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재단 임·직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